

의안번호	2207570
의 퇴 인	강득구 의원
회 답 일	2025. 2. 17.
추계번호	25C0330

교육불평등 해소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억 7,500만원(연평균 7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4조)	70	—	—	—	—	70	14
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6조)	3	3	3	3	3	15	3
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 개발 (안 제8조)	50	50	50	50	50	250	50
교육불평등 실태조사(안 제9조)	40	—	—	—	—	40	8
추가재정소요	163	53	53	53	53	375	75

주: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)	교육부장관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5조(교육불평등 해소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교육불평등 해소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6조(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설치)	교육불평등 해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둔	의무규정
4	안 제8조(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 등)	교육부장관은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·소득·고용 등의 영역과 연계된 교육불평등 지표를 조사·개발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9조(실태조사)	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불평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(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)	○	○ 교육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2	안 제5조(교육불평등 해소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×	○ 각 기관의 기본경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
3	안 제6조(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설치)	○	○ 교육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4	안 제8조(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 등)	○	○ 교육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5	안 제9조(실태조사)	○	○ 교육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
-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5년 주기로 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교육부가 2021년 수행한 “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기초 연구”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- 교육부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2021년 “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기초 연구” 용역(6,860만원소요)을 실시하였음
- 본 추계에서는 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“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기초 연구” 용역 사례와 유사한 약 7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추계기간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7,000만원으로 추계

[표 2] 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							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	70	-	-	-	-	70	1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6조)

-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회의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 운영에 회의수당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본 추계에서는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에 10명(제정안이 명시한 최대 인원의 50%)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, 매년 회의는 2회를 개최하여 회의마다 위촉위원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 - 제정안은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6인의 당연직위원(교육부장관·기획재정부차관·행정안전부차관·중소벤처기업부차관·고용노동부차관·통계청장)을 두고 나머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 전문가 등에서 위촉하도록 규정

- 유사사례인 교육부 소속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경우 2024년 총 2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,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연간 회의 횟수를 2회로 가정
- 회의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을 참고하여 가정¹⁾

□ 추계결과,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,500만원으로 추계

[표 3]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, 명, 회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회의수당 단가(A)	0.15	0.15	0.15	0.15	0.15	-	-
위촉위원 수(B)	10	10	10	10	10	-	-
회의개최 횟수(C)	2	2	2	2	2	-	-
추가재정소요(A×B×C)	3	3	3	3	3	15	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 등(안 제8조)

□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 및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본 추계서는 매년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 개발·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교육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- 본 추계에서는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 개발·조사 연구용역 수행에 교육부가 2022년 실시한 “교육 형평성 지표 개발” 용역 사례와 동일한 5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추계기간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1)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만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만원내로 편성

- 추계결과,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 개발·조사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억 5,000만원으로 추계

[표 4]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·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·조사(안 제8조)	50	50	50	50	50	250	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교육불평등 실태조사 실시(안 제9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불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본 추계서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교육부가 2021년 수행한 “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”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- 교육부는 2021년 “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” 용역(3,636만원 소요)을 실시
- 본 추계에서는 교육부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의 소요재정을 참고하여 교육 불평등 실태조사 수행에 4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추계기간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- 추계결과, 5년 주기의 교육불평등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천만원으로 추계

[표 5] 교육불평등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교육불평등 실태조사 실시(안 제9조)	40	-	-	-	-	40	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